



〈「싱가폴」에서의 CNR 회의 광경〉

국제간호연맹: 국가대표자 회의에 다녀와서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Council of National
Representatives' Meeting*

- 장소: 「싱가폴 · 상그릴라호텔」
- 시일: 1975년 8월 4~8일

한국대표: 회장 전 산 초

〈연대간호대학장, 이학박사〉

지난 8월 4일부터 8일까지에 개최된 I.C.N, C. N.R 회의는 아름답고 잘 정돈된 국제도시 Singapore Sangri-La Hotel Island Bollroom에서 개

최되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되는 의결회 의와, 저녁에는 대통령부인의 초대를 비롯한 각

계에서의 초대로 빈틈없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첫날 오후 9시 30분 개최식에 이어 환영다과회의가 있었으며 보건사회부장관과 보건부 간호행정관 기타 많은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루었으며 첫날 저녁은 대통령부인 초청 만찬회가 관저에서 있어 Singapore의 많은 人士를 만나볼 기회를 가졌으며 그 나라의 아름다운 풍습, 식물, 그리고 진기한 수목등 여러가지 풍물과 문화에 대한 좋은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ICN은 물론 Singapore Train Nurses Association의 빈틈없고 친절한 준비와 접대는 참석자로 하여금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게 하였다.

먼저 이번 회의는 그 목적이 안전토의와 의결회의였으므로 딱딱하고 지리한 감이 없지는 않았으나 4년마다 있는 ICN 세계대회 중에 모이는 CNR 회의보다도 진지하고 안정감이 있으며 많은 양의 업무처리가 되어 참석자로 하여금 회의 참석의 보람을 더욱 충만히 갖게 하였으며 진실로 가치있는 회의였다고 지금도 생각이 된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전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간추려 보면

1. 간호원의 정의 규명
2. 회비 인상전
3. 1975년 여성의 해와 국제간호연맹의 결의안
4. 인간환경을 지키는 간호의 역할에 대한



〈회의장에 배국기를 앞세우고 앉은 한국대표 전산초회장, 그옆이 「독셀부르크」 대표〉

ICN의 정책 성명서 채택

5. 포로와 죄수의 간호를 위한 간호원의 역할에 대한 정책성명서 채택
6. 1977년 Tokyo에서 개최되는 ICN 세계대회 주제채택 (“New Horizons for Nursing”)
7. ICN의 지역별 분할 문제
8. 1979년 CNR 회의장소를 Kenya로 또한 1981년 ICN 세계대회장소를 미국으로 채택한 것 등이다.

이 보고에서는 5일간에 이루어진 회의의 의결사항을 순서대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나중 정식 의사조안이 ICN으로부터 보내올 것임)

끝으로 대한적십자사가 홍정희선생을 CNR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데 대하여 감사한다. 모든 회원국이 혼자 온 나라는 없고 각각 국정대표 2인이 참석했으므로 국가적 체면과 대안간호협회의 위신을 세워 주었으며 바쁜 Schedule가 계속되는 회의에 동반자가 있어 사무적면에서나 정서적면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 이 지면을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앞으로는 꼭 사무국장이 참석해야 될 줄로 믿는다. 우리보다 회원이 적은 개발도상국가에서도 다 인원을 채워서 참석한 것은 우리가 양지해야 할 일이다.

◆의결사항

- 토의안건 1항,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 토의안건 2항, 회원국 결명
- 토의안건 3항, 출석상황보고가 있었다. 43개국 참석했고 참석키로된 몇 개국이 결석되었음을 사과한다. 나중 3개국이 참석하였음.
- 토의안건 4항, 회장에게 위임된 CNR 의결위원회 위원에 인준전에 대하여 회장은 다음과 같이 4인의 위원을 채택하였음
 위원장 : 「스위스」대표
 위 원 : 「오스트리아」대표
 「싱가포르」대표
 국제간호협회편집인, 회의서기
- 토의안건 5항, 「피지」 등의 「노르웨이」 재청으로 토의안건과 사무절차를 회.

의법과 순서를 채택 승인하되 토의사항의 순서중 필요한 부분은 조정하다.

- 토의안건 6항, 전의사록 낭독
1973년 5월 국제대표자회의 의사록을 수락하다.
네델란드등의 독일재청으로 통과되다.
- 토의안건 8항, 회원국 가입정원수락에 관한 사항.
미국 등의 핀랜드 재청으로 국제대표자회의는 1974년 8월 26일 표결에 붙여 더지간호협회와 스와지랜드간호협회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임을 비준한다 통과되다.
- 토의안건 9항, 회장의 보고
케냐 등의 네델란드 재청으로 회장의 보고를 수락하다. 통과되다.
- 토의안건 10항, "실행위원장의 보고를 수락하다."
(노르웨이) 등의 「오스트리아」 재청으로 통과되다.
- 토의안건 11항, 케냐 등의 피지 재청하다.

"상임위원회인 Professional Services Committee에서 제안한 간호원의 정의를 수락한다."

(캐나다) 동의와 (스웨덴) 재청으로 다음 수정안이 다음과 같이 통과되다.

"세계 문장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첫째 수준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은 간호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지시하며 지도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동과학, 생명과학 간호과학을 학문하는 간호원을 준비시킨다."가 첨가될 것이 통과되다.

그러나 (오스트라리아) 동의와 (캐나다) 재청으로 다음 첨가안

"P.S.C.에서 제안했던 정의의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간호요원에 여러 계층이 있는 국가에서는 둘째 수준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은 첫째 수준 간호원의 감독과 협조 하에 간호를 할 수 있도록 간호이론과 임상실제를 학문하는 간호원을 준비시킨다."가 첨가 통과되다.

그러므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간호원은 기본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끝마치고 한 국가의 면허나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기본 간호교육이란 간호실무와 특수한 능력을 개발하는 post basic education을 위하여 폭 넓고 깊은 기초를 제공하는 정식으로 인정된 프로그램이다. 첫째 수준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은 간호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지시하며 지도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동과학, 생명과학, 간호과학을 학문하는 간호원을 준비시킨다. 첫째 수준의 간호원은 건강증진, 질병예방, 환자간호, 재활간호를 위해 어느 상황에서나 간호를 계획하고 제공하고 평가하는 책임이 있고, 건강팀의 일원으로서의 기능이 있다. 간호요원에 여러 계층이 있는 국가에서는 둘째 수준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은 첫째 수준 간호원의 감독과 협조하에 간호를 할 수 있도록 간호이론과 임상실제를 학문하는 간호원을 준비시킨다."로 수정 통과되다.

그러나 또다시 (그리스) 동의 (미국) 재청으로

"P.S.C.에서 간호원을 위한 계속적인 교육에 대하여 제안된 성명서는 수락한다."

그 다음 개의로

(오스트라리아)동의

(오스트리아)재청으로

"간호원을 위한 계속적인 교육에 대하여 제안한 성명서의 제3절은 수정되었으므로 둘째 문장은 다음과 같다: 소의된 지역에서 종사하는 간호원들에게도 도달될 수 있는 매개체를 사용하여 모든 간호요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



<회의를 마치고 각국대표와 원담하는 전산초 회장>

이어야 한다. 또 그것은 인정, 승진, 보수에 의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통과되다.

그러므로 간호원을 위한 계속적인 교육에 대한 설명서는 다음과 같다.

“급속한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변화에 비추어 볼 때 국제간호협회는 안전하며 효율적인 간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간호교육의 중요성을 확신한다.

계속적인 교육은 간호원들의 발전은 물론 업무의 요구에 대한 해답을 준다: 진행 업무에 대한 최신의 지식, 전문화와 직업발달에 대한 준비. 계속적인 교육은 자아학습, 실무교육 프로그램, 정식적인 post-basic courses 와 대학원 교육운동과 같은 광범위한 교육 활동을 포함한다. 계속적인 교육은 소외된 지역에서 봉사하는 간호원들에게도 도달될 수 있는 매개체를 사용하여 모든 간호요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인정, 승진, 보수에 의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계속적인 교육은 간호협회와 정부 그리고 보건기구의 협력하에 간호교육과 일반교육 체제에 의해 혹은 그 체제 안에서 발전되어질 것이다.

국제 간호협회는 계속적인 간호교육에 대한 국가적 체제를 더욱 발전시키거나, 창설, 증진하는데 도움을 필요로하는 회원국을 지도하며 격려한다.” 통과되다.

핀마르크 등의 탈레이지아 재청하다.

“P.S.C.의 다음 제언을 수락한다: 도표에서 열리는 국제 대표자 회의에 간호학생들의 참석을 위한 준비를 한다; 이 회의는 도표의 간호학생들에 의해 조직된다; 제3부회장이 축사를 한다; 그리고 적당한 국제 간호협회 대표가 회의에 참석할 것이다; 그리고 회의에서 선출된 의장이 국제 대표자 회의에서 정한 때와 장소에서 국제 대표자 회의에 보고할 것이다.

(네델란드) 등의 (독일) 재청하다.

“첫째 절 후에 다음 구를 삽입한다: 이사회나 국제 간호협회 회원은 학생회와 일하며 회의의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을 제공한다.” 부결되다.

(덴마크)가 제안한 등의는 통과되었다.

(네델란드) 등의 (핀란드) 재청하다.

“P.S.C.의 보고는 오전시간 여러가지 수정 첨가

안이 논의 되었으나 수정된대로 수락되다.” 통과
• 토의안건 12항 (캐나다) 등의 (이란) 재청하다.

“1973년도 국제 간호협회 회계 감사는 받아들이다.” 통과되다.

(피지) 등의 (가나) 재청하다.

“1974년도 국제 간호협회 회계 감사는 받아들이다.” 통과되다.

(타일랜드) 등의 (나이제리아) 재청으로

“1973년도 Florence Nightingale International Foundation(F.N.I.F) 회계 감사는 받아들이다.” 통과되다.

토의안건 14항 (핀란드) 등의 (그리스) 재청하다.

“이사회는 제언 즉 국제 간호협회 회비를 한 사람당 Sw. frs. 310이 되도록 하기 위해 Sw. frs. 1.50까지 인상하자는 제언이 수락되다.”

주: 이 결의안은 다음 의결에 의해 무효로 되었다.

(스웨덴) 등의 (덴마크) 재청하다.

“위의 제언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국제 간호협회 회비를 한 사람당 Sw. frs. 2.20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0.60까지 인상한다.”

(미국) 등의 (자이테) 재청하다.

“같은 국제 대표자 회의전에 의결되었던 수정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회원 1에서 100,000인 국가는 각 회원당 frs 2.00; 100,000에서 150,000인 국가는 각 회원당 frs. 1.50; 150,001에서 200,000인 국가는 각 회원당 frs. 1.00; 200,001에서 250,000인 국가는 각 회원당 frs. 0.60; 그리고 250,001에서부터 그 이상은 각 회원당 0.40을 지불하도록 한다.” 부결되다.

(오스트라리아) 등의 (필리핀) 재청하다.

스웨덴에서 제안한 정정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다: 회비는 각 회원당 frs. 2.00이 되도록 각 회원당 frs. 0.40을 인상한다.” 부결되다.

(자마йка) 등의 (잠비아) 재청하다.

“스웨덴에서 제안한 정정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다. 회비를 다음과 같이 인상한다. 회원 1부터 50,000인 국가는 회원 1인당 frs. 2.10; 50,001부터 100,000인 국가는 frs. 2.00; 100,001부터 150,000인 국가는 frs. 1.60; 150,001부터 200,000인 국가는 frs. 1.00; 200,001부터 250,000인 국가는 frs. 0.60; 250,000이상인 국가는 0.40.” 부결되다.

스웨덴이 동의하고 덴마크가 재청한 안건은 통과되다.

(덴마크) 등의 (뉴질랜드) 재청하다.

“국제 간호협회 회비를 분할하는 원칙을 연구하기 위한 이사회는 국제 대표자 회의의 인준을 받아야하며 1977년의 토의를 위해 추천서본 준비할 것이 요청되는데, 이 추천서는 가능한한 국제대표자회의 개최 6개월 전에 모든 회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통과되다.

• 토의안건 15.1 (미국) 동의하다.

“1975년은 국제 여성의 해로 선언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의 여성들이 아직도 성별에서 고용면에서, 고등교육과 그 외의 인생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면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하는 현 실정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법률 제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여러 국가의 정부들이 동등한 업무에는 동등한 수당을 지불해야한다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차별대우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 된다면, 새로운 법률의 변화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은 상당히 증가되고 촉진될 수 있기 때문에 ;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것을 결의한다. 국제 간호협회 대표자 회의는 동등한 업무에 동등한 임금을 지불하는 근로법을 채택하지 않은 정부가 있다면 즉시 1975년 중에 그러한 법률 채택하도록 각 회원들이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 ; 그리고 아래의 것을 덧붙여 결의한다. 국제 간호협회의 모든 회원들은 세계 여성의 해 동안에 성별에 의해 직업면에서 차별 대우를 하는 문화적 사회적 가치관을 변경 시키는 데에 자신의 노력을 기울이며,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가치관을 용납하지 않도록 하게 한다.” 통과되다.

• 토의안건 15.2 (미국) 동의 (독일) 제청하다.

“로테리아 회원국이 제안한 국제 간호협회의 도입 계획에 관한 결의안을 받아들이다.”

(오스트리아) 동의 (피지) 제청하다.

“수정된 결의안의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다.

국제 간호협회 회의의 장소는 주최국의 보증서에 따르며, 서류는 모든 회원국의 대표자들이 국제기구 활동에 참가하고 참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 모든 가능한 행위를 보증한다.” 통과되다.

개정된 결의안은 다음과 같다.

“국제 간호협회는 비정치적, 비종파적 기구이므로 오직 간호원들과 간호에 관련된 일에만 관계한다 ; 그리고 국제 간호협회의 행정기구는 회원국의

국가 대표자로 구성된 회의이다 ; 그리고 때때로 국제 대표자회의는 국제 간호협회 동체 의에서 차별 행위를 하기 때문에 불충분 하다 ; 그리고 그러므로 어떤 회원국은 국제 토의와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 당하고 있다 ;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결의되었다.

국제 간호협회 회의의 장소는 주최국의 보증서에 따르며, 서류는 모든 회원국의 대표자들이 국제기구 활동에 참가하고 참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 모든 가능한 행위를 보증한다.” 통과되다.

• 토의안건 16항, (독일) 동의 (인도) 제청하다.

“인간환경을 지키는 간호원의 역할에 대한 국제 간호협회의 정책 성명서로서 다음 것이 수락되다.

인간환경의 보존과 증진은 인간의 생존과 복지를 위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거대하고 절박한 업무들이 모든 개인 및 모든 전문직에게 놓여 있는데 그 업무란 인간의 환경을 보호하고, 세계의 자원을 보존하며,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며 노력하는 책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간호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건강한 인간의 환경에 넘적 요소 및 이에 저해되는 요소를 찾는다.

—일상활동에서 잠재적으로 해로운 화학 물질에 관련된 자르나 방사능 문제, 새로운 건강의 위협 요소 및 그의 예방 또는 경감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개인, 가족, 또는 지역사회 집단에게 지식을 주고 또 이 지식을 적용한다.

—개인, 가족 또는 지역사회 집단에게 환경자원의 보존에 관해서 뿐만아니라 환경으로 인한 건강을 저해하는 위협 요소의 예방법을 가르치고 알려준다.

—인간의 추구에 존재하는 건강 위협 요소와 건강 보건 간호분야의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데 있어 보건 당국과 함께 일한다.

—환경적 건강문제를 위한 지역사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불리한 환경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경고해 추기 위한 자트를 제공하는 연구와 생존 및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발전하기 위한 연구에 참가한다.” 통과되다.

• 토의안건 12.2, (오스트리아) 동의 (노르웨이) 제청하다.

“1974년도 회계감사를 수락하다.” 통과되다.

• 토의안건 17항, (가나) 동의 (뉴질랜드) 재청하다.
“포르와 죄수의 간호에 있어서 간호원의 역할에 대해 제안한 정책성명서는 수락되다.”

(트리니아드와 토바고) 동의 (핀란드) 재청하다.
“아래의 것을 덧붙여 결의한다”고 한 첫 조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간호원은 포르와 죄수의 육체적, 정신적 상해 치료의 ‘지식을 갖고 정당한 행동을 하며, 그것을 적당한 국가기구나 국제 기구에 보고한다 ; 그리고” 통과되다.

포르와 죄수의 간호에 있어서 간호원의 역할에 대한 국제 간호협회의 정책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국제 간호협회의 간호원의 윤리강령은 특히 다음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 1) “간호원의 기본 책임은 다음의 4가지이다. 건강증진, 질병예방, 건강보존, 고통경감.
- 2) “간호원의 주요 책임은 간호를 요하는 사람에게 있다.
- 3) “간호원이 전문직의 범위내에서 활동할 때에는 전문직의 명예가 되는 품행을 항상 지녀야 한다.
- 4) “간호원은 자신의 간호가 협동자나 다른 사람에 의해 위협을 받게 될 때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적당한 행위를 취한다.”

그리고 1973년 국제 간호협회는 “1949년 제네바협약에 있어서 간호원의 의무와 권리” 중에서도 특히 국가적 성격을 띤 즉 내분규, 내란, 무력 반란 뿐만 아니라 무력 국제 분규의 경우에 대해 달한 것은 지지할 것을 재확인 하였다 :

1) 무장군인이나, 죄수나, 어떤 적의가 없는 사람이면 간에 상처를 받았거나 병이 들었다면 간호를 하고 보호를 해준다. 인간적으로 대우한다, 즉 :

—의학적, 치과적 혹은 병원치료가 죄수에게 유익한 것이고 유익하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종류의 의학적 실험이나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신체적 절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들은 고의로 의도치료나 간호를 받지 않은 채, 방지될 수 없으며, 전염 또는 감염에 노출된 상황에 방치되어서도 안된다,

—그들은 적군에 의해서 성, 인종, 국경, 종교, 정치적 사상, 기타 유사한 어떤 조건에 기반한 불리한 차별대우를 받지않고 인간적으로 치료 간호되어야 한다.

2)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에게 관하여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다음의 행동들은 금지되고 금지되어야 한다.

폭력, 생의 모독, 특히 모든 종류의 살인, 신체 절단, 끔찍한 처치나 고문 ; 인격모독, 특히 굴욕적 및 타락적 행위.

1971년 국제간호협회는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을 확인하고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받아들였다.

1) “이 선언에서는 종족, 색깔,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다른 사상, 국가적 혹은 사회적 기반, 재산, 출생 혹은 다른 지위와 같은 어떤종류에도 구별없이 모든 인간은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린다(제2조),

2) “어느 누구도 고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또는 타락적인 처치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제5조) ; 그리고 가끔 죄수나 포로의 양식에 관련하여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영구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심문방법들이 증가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것을 결의했다.

국제간호협회는 죄수나 포로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해를 주는 모든 방법들의 사용을 비난한다 ; 그리고 아래의 것을 덧붙여 결의한다.

죄수나 포로의 정신적 혹은 육체적 질병치료에 지식을 지닌 간호원들은 적절한 국가적 혹은 국제적 기구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적당한 행위를 취한다 : 그리고 아래의 것을 덧붙여 결의한다.

연구의 본질과 위험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여 환자가 이해한 후 자의로 동의했을 때에만 간호원은 죄수들에게 행해지는 임상연구에 참여한다 ; 마지막으로 아래의 것을 결의한다.

국가적 안전이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간호원은 우선 환자에게 책임을 진다.” 통과되다.

(덴마크) 동의 (핀란드) 재청하다.

“간호원의 윤리강령에 부과할 것을 연구하는 이사회는 국제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아서 간호원이 고문에 참여하는 것을 회피하도록 제언서를 작성하여 1977년에 열릴 국제대표자회의에서 모든 회원국들에게 배부한다.” 통과되다.

• 토의안건 20항, (덴마크) 동의 (네델란드) 재청하다.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에 관한 보고서

가 수락된다.” 통과되다.

(오스트라리아) 동의 (유나이티드 킹덤) 재청하다.

“이사회에서는 alternative format 과 같은 INR 에 포함된 정보를 간호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조사하며, 그 조사의 결과와 비용에 관한 제반 정보를 1977년에 개최될 국제 대표자 회의의 토의를 위하여 각 회원국에게 배부한다.” 통과되다.

• 토의안건 18항,

일본에서 1977년에 개최될 회의의 주제는 “간호의 새로운 영역(New Horizons for Nursing)”으로 합의되다.

• 토의안건 19항, (트리니다드나 토바고) 동의하다.

(나이지리아) 재청하다.

“토의안건 11항에서 채택된 간호원의 정의 가운데 마지막 문장중 인간이란 단어는 간호원으로 대체한다.” 부결되다.

그러므로 토의안건 11항에서 채택된 간호원의 정의는 국제간호협회 법령과 법규 제5조에 있는 정의에 배치될 것이다,

(핀란드) 동의 (이스라엘) 재청하다.

“국제간호협회 법령과 법규 제6조 2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다: 각 회원국은 회비에 관한 제1조 2항에 의거하여 회원수를 명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 통과되다.

(오스트라리아) 동의 (핀란드) 재청하다.

“국제간호협회 법령과 법규 제7조 1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다: 모든 회원국의 년회비는 전년도 12월 31일 까지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를 기초로 하고, 국제간호협회 본부가 설치되어 있는 국가의 통화에 준한다. 활동하고 있는 회원이라 함은 제5조의 간호원의 정의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본국 간호협회에 회비를 징수하고, counting basis에 의거한 권리와 특권을 누리는 사람을 말한다. 년회비 액수는 이사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국제 대표자회의의 의결을 통해 결정될 것이다.” 통과되다.

(벨루다) 동의 (이스라엘) 재청하다.

“국제간호협회 법령과 법규 제7조 2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다: 모든 회비는 그해 1월 31일 까지 선불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실행 위원장의 사전 동의를 얻을 경우는 2회로 분납할 수 있으며 한번은 1월 31일 이후 지불할 수 있다.” 통과되다.

(인도) 동의 (그리스) 재청하다.

“국제간호협회 법령과 법규 제11조 3항(b)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다: 행정 및 재무 위원회로서 활동하며 재무에 관해서 이사회의 권고에 따른다.” 통과되다.

(오스트리아) 동의 (스위스) 재청하다.

“국제간호협회 법령과 법규 제11조 4항(c)는 삭제되다.” 통과되다.

(잠비아) 동의 (아일랜드) 재청하다.

“국제간호협회 법령과 법규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다: 이 법령과 법규는 국제 대표자 회의의 이상의 표를 얻어 변경되거나 철폐될 수 있다. 제안된 수정안은 이사회에 의해서 국제 대표자 회의에 제출되며, 회원국은 국제 대표자 회의에 추천을 받기 위해 이사회에 제출한다. 모든 제안된 수정안은 적어도 다음에 개최될 국제 대표자 회의 12개월전에 국제간호협회본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통과되다.

(캐나다) 동의 (나이지리아) 재청하다.

“필요하다면 국제간호협회 법령과 법규에 조문을 적당한 형식으로 삽입 편집한다.” 통과되다.

• 토의안건 21.2, (가나) 동의 (불란서) 재청하다.

간호의 권한(Nursing authority)에 대해 제안된 결의안을 수락하다.” 통과되다.

(불란서) 동의 (스위스) 재청하다.

“간호의 권한에 대해 제안된 결의안 가운데 이때의 것을 덧붙여 결의한다라는 제목을 단 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다: 이론과 실재를 포함한 모든 간호 과정은 교수 자격이 있는 간호원들에 의해 교수된다.” 통과되다.

(미국) 동의 (네델란드) 재청하다.

“간호의 권한에 대해 제안된 결의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 채택되다: 간호는 다른 모든 보건 전문가와 함께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을지라도 자체의 영역과 권리를 지닌 전문직이다; 그리고 간호원은 건강한 사람과 앓는 사람 모두에게 간호 업무를 제공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리고 간호는 간호학생들에게 가르쳐줘야만하는 간호지식과 간호의 실제의 함축된 것이다; 그리고 간호과정은 의학, 약리학, 심리학과 같은 비 간호과정과 다르며, 또한 비 간호 교수단에 의하여 교수되는 다른 과목과도 다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모든 형태의 보건 관리 기구에서 모든 간호업무는 자격을 갖춘 간호원 지도자에 의해 관리 된다.

그리고 아래의 것을 덧붙여 결의한다.

모든 간호교육 프로그램은 자격있는 간호원들에 의해 관리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것을 결의한다.

이론과 실재를 포함한 모든 간호과정은 교수자격이 있는 간호원들에 의해 교수된다.” 통과되다.
토의안건 21.1 (노르웨이) 동의 (잠비아) 재청하다.

“1. 국제 대표자 회의는 1953년 이사회에서 승인하였고, 드 국가 자체의 요구와, 지역적 현실, 문화나 그 밖의 다른 요소에 기반을 둔 간호협회의 지역별 분할의 원칙을 시인한다;

2. 국제 간호협회는 이러한 지역분할의 형성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3. 국제 간호협회는 국제간호협회의 지역별 분할과 비공식적인 관계만을 유지한다.

4. 비공식적인 관계란 다음을 의미한다:

(a) 간호의 발전상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제 간호협회와 조직된 지역별 그룹사이에 일어나는 협조적 관계

(b) 그러한 협조적 행위는 지역별 그룹이나 국제간호협회에서 먼저 요청할 수 있다;

5. 이러한 제언은 국제 간호협회 정책과 Procedure Book 에 구체화한다. 통과되다.

토의안건 21.3, (엔타야크) 동의 (말레이시아) 재청하다.

“국제 대표자 회의는 전 국제 간호협회 의장 Margrete Kruse 가 제안한 ICN 공식깃발을 채택한다.” 통과되다.

토의안건 22항 (케나다) 동의 (나이지리아) 재청하다.

“1981년 개최될 회의의 장소는 국제 대표자 회의에서 선정한다.” 통과되다.

(스위스) 동의 (비엘란드) 재청하다.

“1981년 개최될 회의의 장소는 비밀 투표로 한다.” 통과되다.

비밀 투표 결과 1981년 개최될 국제 간호협회 회의의 장소는 미국으로 결정되다.

(뉴질랜드) 동의 (케냐) 재청하다.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국제간호협회 대표자 회의는 세계보건기구 본부에 간호과 또는 간호담당관의 위치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 것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이러한 상황이 전세계의 간호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세계보건기구 운영진과 이사회에 알리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제간호협회 이사회에 요청한다.” 통과되다.

(스웨덴) 동의 (미국) 재청하다.

“국제 대표자 회의는 1975년 7월 31일 세계보건기구 간호 담당관의 자리에서 은퇴한 Miss Lily Turnbull 이 세계 보건과 간호의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명한다. 국제 대표자 회의는 Miss Turnbull 의 앞으로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의결회의 의장 Miss Y. Hentsch (스위스)가 제안한 호의적인 결의는 단장 일치로 채택되었다.

• 토의안건 23항,

1979년에 개최될 국제 대표자 회의의 장소는 비밀 투표로 결정하기를 단장일치로 합의하다.

비밀 투표의 결과 1979년 국제 대표자 회의는 쾨른에서 개최하기로 가결하다.

(싱가포르) 동의 (나이지리아) 재청하다.

“1975년 국제 대표자 회의를 산회한다.” 통과되다.

대한보건간호원회
「뱃지」도안 공모

<p. 90에서 계속>

정을 연구분석하여 Crisis 에서의 intermediate Problem-Solving Mechanisms 와 Need-response Pattern 을 제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Adaptation 을 다루고 있다. adaptation 개념적 구성과 assessment 를 일반적인 인간의 adaptation 과정에서 관찰하면서 환자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개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현재 대두되어지며 활용되어지고 있는 간호학과 관련된 이론이 총망라하여 정리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적인 연구논제가 발표되어져 아리송한 이론의 개념이 더욱 구체화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